

# 企劃室

## '95 主要業務 推進計劃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군정주요업무추진	<p>□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 상 : 주요 군정시책 및 각종 건설사업</li> <li>○ 시행계획수립 (정기 및 수시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기 : '94. 1월중</li> <li>◦ 수시 : 추경등 당초계획 변경요인 발생시</li> </ul> </li> <li>○ 내 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군정시책 : 군정전반에 걸친 주요시책</li> <li>◦ 건설사업 :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의 단년사업 및 계속사업</li> </ul> </li>   <p>□ 주요업무의 심사분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 기 : 매분기말 기준 익월 20일 이내</li> <li>○ 내 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분기별 추진실적의 정밀분석</li> <li>◦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전 도출</li> <li>◦ 향후 추진방향 제시</li> </ul> </li> <li>○ 분석방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준비단계인 1/4분기를 제외한 2/4분기이후 사업장 위주의 현장확인 실시로 형식적인 분석지양</li> <li>◦ 공무원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발생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원인분석 및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대형사고예방	<p>○ 분석결과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상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관리</li> <li>◦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추진 유도</li> </ul> <p>□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</p> <p>○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 편성</li> <li>◦ 철저한 현장확인 및 점검으로 사고취약 요소 사전발굴 조치</li> <li>◦ 취약요인별 보완·정비대책 강구</li> </ul> <p>○ 대형사고예방수습을 위한 협조·공조체제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「사고예방대책협의회」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 성 : 의정부경찰서등 유관기관 단체 19명</li> <li>- 운영내용 : 재해발생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◦ 「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」 운영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 성 :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사고예방 실무자 (19명)</li> </ul> </li> </ul>	기획계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	<p>- 운영내용</p> <p>관내 위험시설물 합동점검</p> <p>소관기관 관리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</p> <p>○ 「양주군지역안전점검대책반」 설치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 : 군</li> <li>◦ 위험시설물등 관리대상 지정 : 77개소</li> <li>◦ 안전점검대책반 구성 : 8개대책반 27명</li> </ul> <p>○ 취약시설물 관리 : 43개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 량 : 39개소</li> <li>◦ 화재 취약시설 : 4개소 (조치완료)</li> </ul> <p>※ 교량 보수사업비 307백만원 ('95)</p> <p>○ 대형사고 안전진단 점검 장비의 확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상 : 교량·건축물등</li> <li>◦ 장비 : 진동계, 비파괴 시험기등 7종 7점</li> </ul> <p>※ 「양주군재해예방대책협의회」 소속 유관 기관 보유현황 : 4개기관 61종 125점</p>	
생 활 개 혁	<p>□ 「생활개혁」 추진의 활성화</p> <p>○ 생활개혁 추진본부 재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책반 및 관련 부서와의 연계추진 가능 토록 실제 추진부서 위주로 구성</li> <li>◦ 7개대책반 → 9개대책반으로 증강 (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, 집단이기주의 극복)</li> </ul>	기획계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개혁 추진과제 선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형식적인 과제 지양(월별과제 선정추진)</li> <li>◦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과제위주로 선정 (현장 위주의 해소대책 수립 추진)</li> </ul> </li> <li>○ 각급기관·단체의 참여확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각대책반 관련 민간단체(음식업조합등)</li> <li>◦ 읍·면단위 기초단위기관(우체국·농협등)</li> </ul> </li> <li>○ 생활개혁 실천위반 신고창구 운영강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각종 불편사항 신고창구의 일원화 (생활개혁신고창구 - 43-3000)</li> <li>◦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(기념품 지급)</li> <li>◦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</li> </ul> </li> <li>○ 생활개혁 주민신고망 재정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읍·면단위 각급 신고망 활용</li> <li>◦ 주민신고원 위치</li> </ul> </li> </ul>	
의회운영	<p>□ 의회업무의 내실추진</p> <p>【 '95 지방의회 전망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95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에 의해 직선되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필요</li> <li>○ 특히 회의일수 증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로 자료제출, 관계공무원 출석등 의정 활동 지원 범위 확대</li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행정협의회	<p>【 추진계획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회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군정을 심도 있게 논의·해결하는 동반자 관계 정립</li> <li>○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제공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</li> <li>○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의 공동해결</li> <li>○ 의회 회기중 직원들의 방청으로 의안상정 및 처리등 의정운영에 대한 인식제고</li> </ul> <p>□ 행정협의회 내실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 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급격한 도시화·산업화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의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발생의 사전 예방</li> <li>◦ 발생된 현안문제의 자치단체간 협력과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 복지 증진</li> </ul> </li> <li>○ 방 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치단체간 체계적인 협의를 통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과 자치단체간 공동이익 추구</li> <li>◦ 지역 이기주의로 설치가 어려운 협오시설, 공해유발시설등을 지역내 설치시 불이익 해소 대책 강구로 피해와 보상의 조화도모</li> <li>◦ 미해결 분쟁은 상급기관에 설치된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 조정 해결</li> </ul> <p>○ 협의회 구성 : 2개권역 (의정부권, 동두천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의정부권 : 양주, 의정부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포천, 가평 (7개시군)</li> <li>◦ 동두천권 : 양주, 동두천, 파주, 연천, 포천 (5개시·군)</li> </ul> <p>○ 협의회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기회 : 년 2회 (상·하반기)</li> <li>◦ 임시회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</li> </ul> <p>○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치단체간 협의·협력강화 : 인접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시 관련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및 공동계획 수립 또는 추진 시기의 조정</li> </ul>	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민·관 공동출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쟁의 체계적·지속적 해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분쟁의 객관적 협의조정 및 미합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조정 신청</li> </ul> </li> <li>○ 자문위원 위촉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전문분야별로 자문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회의개최시 참석시켜 협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협의결과의 이행력 강화</li> </ul> </li> <li>○ 행정협의회 제도의 장점 및 효율적 운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법등에 대한 교육·홍보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군민 종합복지회관 건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재지 : 군민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</li> <li>○ 사업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규모 : 부지 5,000평, 연면적 1,200평 (지하 1층, 지상 3층)</li> <li>○ 사업비 : 3,240백만원(건축비)</li> <li>○ 사업기간 : '96~'98년</li> </ul> </li> <li>○ 시설내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 1층 : 관내 농·공산품 판매점 및 향토 음식점</li> </ul> </li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상 1층 : 사무실, 농·공산품 전시장 (영·유아 보육시설)</li> <li>○ 지상 2층 : 예식장</li> <li>○ 지상 3층 : 식당(회갑연, 피로연) 및 각종 행사장 겸용</li> </ul> <p>※ 야외예식장(전통혼례 겸용), 주차장, 조경(휴식공간)</p> <p>○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(주민설문조사 병행) : 의회의원, 기관장, 지역유지, 주민등</li> <li>○ 추진계획 확정</li> <li>○ 설립준비 기획단 구성 (체계적, 조직적인 추진)</li> </ul> <p>※ 대상사업 추가발굴 ('95. 1~2월) - 공무원·군민 제안제도 활용</p> <p>○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편익 제고</li> <li>○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</li> </ul>	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행정 관찰	<p>○ 목 표</p> <p>: 주민이 생활불편을 느끼기 전에 공직자들이 스스로 해결해 줌으로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</p> <p>○ 관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도로교통분야 : 교량 도로파손, 신호등 교통표지판등</li> <li>◦ 상 · 하수도분야 : 상수도관 파손, 맨홀불량등</li> <li>◦ 청소환경분야 : 쓰레기 적치, 공해배출등</li> <li>◦ 공공시설분야 : 정류장, 공중화장실, 마을회관등</li> </ul> <p>○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관장 행정관찰제 (Road Checking) 운영</li> <li>◦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 운영 : 배분기 1회, 해빙기, 장마기, 동절기</li> <li>◦ 출장자의 행정관찰 보고서의 제출 강화</li> <li>◦ 접수된 행정관찰사항 즉시 전파 및 5일이내 처리체계 확립</li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지시사항 관리	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시사항의 신속·정확한 전파</li> <li>◦ 지시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철저</li> <li>◦ 추진성과 심사분석 및 문제요소 해결</li> </ul> <p>○ 관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 통령 지시사항</li> <li>◦ 국무총리 지시사항</li> <li>◦ 장관 지시사항</li> <li>◦ 도지사 지시사항</li> <li>◦ 군수 지시사항</li> </ul> <p>○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문접수 즉시 기관장 선열</li> <li>◦ 접수즉시 해당부서 전파</li> <li>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관리카드 작성</li> <li>◦ 분기별 추진상황 심사분석</li> <li>◦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</li> </ul>	기획계
공무원 제안모집	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과 지방행정의 능률향상 예산절감등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</li> <li>◦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, 시책화하여 군민복지 증진</li> </ul>	기획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	<p>○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무원 제안모집 : 년 2회(상·하반기)</li> <li>◦ 제안모집 사전공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소 3개월전 공고로 심도있는 연구 유도</li> </ul> </li> <li>◦ 개인자격 접수허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식적이고 빈집한 절차 배제</li> </ul> </li> <li>◦ 입상자에 대한 특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승급, 희망부서 전보</li> </ul> </li> <li>◦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제안에 대해 경기도 제안응모 기회부여</li> </ul>	
전전한 재정운영	<p>□ 향후 예산편성 기본계획</p> <p>○ 세입예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각종 규정의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세입원 포착</li> <li>◦ 의존수입은 내시액의 누락여부 철저히 확인 전액 계상</li> <li>◦ 수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 정수율 적용 계상</li> </ul>	예산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	<p>○ 세출예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의 각종경비 효율성·타당성 재검토</li> <li>○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</li> <li>○ 국·도비 보조사업은 우선순위, 효과성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비부담</li> <li>○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, 그 결과에 따라 지원</li> <li>○ 국·도비 부담액을 우선하고 경상비 및 소규모 투자지양</li> </ul> <p>□ 예산배정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간 : '95. 2월</li> <li>○ 대 상 : 일반 및 특별회계</li> <li>○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월별 자금 수급계획 수립</li> <li>○ 예산절감 긴축운영등을 고려하여 작성</li> <li>○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긴진한 재정운영</li> </ul> </li> </ul>	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	<p>□ '풀' 보조금 관리</p> <p>○ 대상 :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각 사회단체</p> <p>○ 지원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</li> <li>◦ 군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◦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보조금액 가감</li> <li>◦ 각종 사회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</li> </ul>	
중기지방재정계획	<p>□ '96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</p> <p>○ 대상분야 : 일반 및 특별회계</p> <p>○ 계획기간 : '95~'99년 (5개년)</p> <p>○ 수립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: 지역경제, 재정지표등</li> <li>◦ 재정전망 : 세입 및 세출추계, 투자가용재원판단</li> </ul>	예산계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계획 수립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투자시기 설정 및 재원배분</li> </ul> </li> <li>○ 부족재원 대책강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</li> </ul> </li> <li>○ 예산반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년도 예산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 운영</li> <li>○ 예산편성 당시 여건이 변경된 사업은 조정 편성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'96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작성 시간 : '95. 8~9월</li> <li>○ 자료작성시점 : 전년도 6. 1 ~ 12. 1 현재</li> <li>○ 작성 대상 : 기준재정 수요 27개 항목</li> <li>○ 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기준재정 수요 27개 항목에 대한 특정 항목 별, 특정 단위별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으 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도모</li> </ul> </li> </ul>	예산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지방양여금 산정자료	<p>□ '96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</p> <p>○ 작성기간 : '95. 6~7월</p> <p>○ 내용 : 양여금 대상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</li> <li>◦ 오염하천 정화사업</li> <li>◦ 정주권 개발사업</li> <li>◦ 청소년 육성사업</li> </ul>	예산계
현행 법령집 구입 배부	<p>○ 목적 : 법령집이 없는 실과소에 법령집을 구입·배부하여 업무처리의 정확과 법령숙지로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·정확을 기하고자 함.</p> <p>○ 수량 : 5질 (1질→50권)</p> <p>○ 배부처 : 법령집이 없는 실과소 (사회진흥과, 산업과, 축산과, 산림과, 주택과)</p> <p>○ 소요예산 : 4,500천원</p>	법무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												
양주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 적 : 수시로 정비(제·개정 및 폐지)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추록·발간하므로써 업무수행에 월활을 기하고자 함.</li> <li>○ 수 량 : 200질(1질→3권)</li> <li>○ 배 부 처 : 본청 및 읍면 각계별, 도, 북부출장소 도내 전시·군</li> <li>○ 발간횟수 : 4회</li> <li>○ 소요예산 : 10,200천원</li> <li>○ 기 타 : 현행 1질 2권을 3권으로 분철</li> </ul>	법무계												
양주군 자치법규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양주군 자치법규 보유현황          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57 1220 1071 1337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계</th><th>조례</th><th>규칙</th><th>훈령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233</td><td>127</td><td>61</td><td>45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○ 목 적 : 현행 자치법규중(훈령포함)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관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에 따른 행정여건 변동등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주민편의적,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코자 함.</li> </ul>	구 분	계	조례	규칙	훈령	비고	계	233	127	61	45		법무계
구 분	계	조례	규칙	훈령	비고									
계	233	127	61	45										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○ 방 침</p> <p>[ 1단계 ]</p> <p>: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군 자체적으로 정비 가능한 자침법규는 '94년말까지 일제 정비</p> <p>※ '94년도 정비실적 (단위:건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4">정 비 실 적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제정</th> <th>개정</th> <th>폐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91</td> <td>28</td> <td>59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조례</td> <td>38</td> <td>16</td> <td>2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규 칙</td> <td>37</td> <td>4</td> <td>32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훈 령</td> <td>16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2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 2단계 ]</p> <p>: 국가의 법령정비 계획과 연계한 일제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95 상반기 : '94 하반기 법령정비 사항에 따른 정비</li> <li>○ '95 하반기 : '95 상반기 법령정비 사항에 따른 정비</li> </ul> <p>○ 정비방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</li> <li>○ 주민의 권익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의 확대 도입</li> </ul>	구 분	정 비 실 적				비 고	계	제정	개정	폐지	계	91	28	59	4		조례	38	16	21	1		규 칙	37	4	32	1		훈 령	16	8	6	2		
구 분	정 비 실 적		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제정	개정	폐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91	28	59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례	38	16	2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규 칙	37	4	32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훈 령	16	8	6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고문변호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등이나 형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</li> <li>○ 알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등의 정비</li> </ul> <p>○ 목 적 : 소송의 다양화, 대형화의 증가추세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송무능력 향상 도모 및 각종업무 추진에 따른 법규적용 자문으로 법제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</p> <p>○ 인 원 : 1명(목요상 변호사)</p> <p>○ 관련근거 :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</p> <p>○ 고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기타 법령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p>○ 소요예산 : 1,800천원(월 150천원)</p>	법무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															
소송수행	<p>○ 소송현황(계류사건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93 400 1036 693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건 수</th><th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16</td><td></td></tr> <tr> <td>행정소송</td><td>5</td><td></td></tr> <tr> <td>민사소송</td><td>9</td><td></td></tr> <tr> <td>행정심판</td><td>2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방 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장접수 즉시 소송수행자(관련 공무원)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(고문변호사)으로 신속한 소송수행 준비</li> <li>○ 변론기일 이전에 정확한 답변서제출(관련법원)</li> <li>○ 변론시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철저한 항변</li> <li>○ 각종 불변기일 엄수 (불변기일 대장비치 수시확인)</li> <li>○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회수 및 강제 집행에 의한 세입조치</li> <li>○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 분시 중대한 하자로 인한 행위자에 대하여 강제 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등 필요한 조치</li> </ul>	구 분	건 수	비 고	계	16		행정소송	5		민사소송	9		행정심판	2		법무계
구 분	건 수	비 고															
계	16																
행정소송	5																
민사소송	9																
행정심판	2																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새로운 법령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심 법원에서의 패소시 상고의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 (고문변호사 자문등)하여 불변기일 내 상고여부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</li> <li>○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및 소송수행 능력제고</li>       <li>○ 목 적           <p>: 행정쇄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법령중 정비된 법령과 지방행정 및 주민과 직결되는 법령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추진 코자 함.</p> </li> <li>○ 홍보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비된 법령</li> <li>○ 지방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법령</li> </ul> </li> <li>○ 홍보방법           <p>: 관보에서 개정된 법령 발췌하여 반희보 게제 및 유인물로 작성홍보 (실과소, 읍·면)</p> </li> <li>○ 홍보주기 : 월 1회</li> </ul>	법무계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지역내 총생산 (GRDP) 소득추계	<p>○ 목 적 : 지역단위 경제의 순환실태 분석 및 지역별 주민소득 수준등 지역개발의 기초자료</p> <p>○ 조사시기 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료수집 : '95년 3월 ~ 11월 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추계 : '95년 12월 ~ '96년 2월</p> <p>○ 주요 조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농업, 임업, 이업, 광업</li> <li>◦ 제조업, 전기, 가스업, 수도사업, 건설업, 도·소매 및 음식 숙박업</li> <li>◦ 운수, 창고, 통신업, 금융, 보험,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</li> <li>◦ 정부생산자 및 민간 비영리 생산자</li> </ul>	통계계
광·공업통계조사	<p>○ 목 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 경제정책 수립</li> <li>◦ 광·공업 부분 주요 경제지표의 편제 및 개편</li> <li>◦ 광·공산품의 품목별 분석 및 수급동향</li> <li>◦ 지역별 경제지표</li> </ul>	통계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인구이동 통계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적근거 :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정통계 (111-11-10호)</li> <li>○ 조사주기 : 매년</li> <li>○ 조사대상 :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</li> <li>○ 조사시기 : '95. 3. 29 ~ '95. 4. 28 (1개월)</li> <li>○ 조사항목 : 사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, 변동 내용, 변동년월, 조직형태, 사업체 구분, 창설년월, 종사자수, 산업분류 주요 생산품 목명, 전입전 소재지</li> <li>○ 조사목적 : 지역간 인구 이동현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도시 농촌간, 지역간 균형적 국토발전 · 노동시장, 도시교통, 교육 및 주택 · 보건위생 정착등의 정책입안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등을 작성함 에 있어서 통계적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</li> <li>○ 조사주기 : 매월</li> <li>○ 조사시점 :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작성</li> <li>○ 조사대상 : 관내 주민등록 전 · 출입자</li> </ul>	통계계

事業名	事業内容 및 推進計劃	備考
인구동태통계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사목적 : 출생·사망·혼인·이혼등과 같이 인구를 변동 케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국가의 경제·사회·교육· 보건·의료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</li> <li>○ 조사주기 : 매월</li> <li>○ 조사시점 :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작성</li> <li>○ 조사대상 : 출생·사망·혼인·이혼 신고자</li> </ul>	통계계
통계수첩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 적 : 발전하는 군정모습을 지표화 하여 홍보 및 군 산하 전공직자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</li> <li>○ 주요 수록내용 : 군정 주요현황외 198개 항목</li> <li>○ 조사방법 : 본청 및 읍·면, 유관기관 협조</li> <li>○ 제작부수 : 500부</li> <li>○ 제작예산 : 300만원</li> <li>○ 발간시기 : '95.2월</li> </ul>	통계계

事 業 名	事 業 内 容 및 推 進 計 劃	備 考
통계연보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 적 : 각종 지방행정 통계자료의 기록 보존</li> <li>○ 주요 수록내용 : 전년도말 현재의 기본통계 항목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협조</li> <li>○ 조사후 활용 : 각종 시책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</li> <li>○ 발간부수 : 200부</li> <li>○ 발간예산 : 200만원</li> <li>○ 발간 예정일 : '95. 12월중</li> </ul>	통계계
'95 인구주택 총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목 적 : 전국의 모든 인구, 가구, 거처(주택)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제15회 인구주택 총조사</li> <li>○ 방 침 : 지역별 통계 및 메슈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</li> <li>○ 조사기간 : 1995년 11월 1일, 0시를 기준</li> <li>○ 조사대상 : 관내 전지역의 인구, 가구, 주택</li> </ul>	통계계

# 行政能率向上을 위한 審査分析 方法改善

군정주요시책·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「성과측정」에서 나아가 「업무처리기법 평가」로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

## □ 現況 및 問題點

### 【 현 황 】

- 심사분석 목적 및 방법 (1982, 대통령령 제10821호)

- 시책·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→ [집행상황 관리]
-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[집행성과 분석]

※ 요 시정사항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반영

### 【 문제점 】

- 현행 심사분석은 단위사업별 진도 및 문제요인 분석에만 치중

## □ 改善對策

- 사업목적 달성분야(부서)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
  - 사업추진시 행정환경 및 성과도 평가
  - 업무처리기법(숙련도, 숨겨진 노력, 제도개선등) 분석

## □ 期待效果

- 우수 행정사례 전파로 공직내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
-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자료로 활용

## 특 수 시 책

### □ 제 목 : 재해예방 홍보 VTR 제작

관내 유선방송망을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계절별로 시의성 있게 홍보하므로써 재난 사고 예방에 기여

### □ 세부추진계획

#### ○ 계절별 재해 및 사고유형 선정

- 예) 1월 - 설해예방의 달
- 4월 - 산불예방의 달
- 8월 - 풍수해 예방의 달

#### ○ 제작방법

- 재해 및 사고 유형별 발생상황 재현
-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
  - 재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
  - 재해발생시 주민들의 행동요령
  - 응급복구 요령등을 설명

※ 「VTR 양주군 소식」에 고정시간 배정(5분)

#### ○ 홍보방법

-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홍보 : 3개사
- 군, 읍·면 민원실에서 정기 방영 : 매일

### □ 기대효과

-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
- 재난사고의 예방 및 사태 수습능력 제고